

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

제1절 공통 규정

제2.1조 적용범위

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이 장은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.

제2.2조 정의

이 장의 목적상,

소비된이란 다음을 말한다.

- 가. 실제로 소비되거나,
- 나. 상품의 가치, 형태 또는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거나 다른 상품이 될 정도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제조된 것

유통업자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상업적 유통, 대리, 양여 또는 대표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.

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.

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이란 그 구성부품,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.

스포츠용으로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, 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.

수입허가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(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외의 것)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. 그리고

이행요건이란 다음 요건을 말한다.

- 가.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출될 것
- 나.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

- 다.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선호를 부여할 것
- 라.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, 또는
- 마.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, 또는 외환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키는 것

그러나 다음 요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- 바.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될 것
- 사.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
- 아.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, 또는
- 자.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

제2절 내국민 대우

제2.3조 내국민 대우

각 당사국은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.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.

제3절 관세 인하 또는 철폐

제2.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

1.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각 당사국은 부속서 2-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한다.
2.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양 당사국은 부속서 2-가의 양국

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.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부속서 2-가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.

3. 당사국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부속서 2-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일방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.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해 요구되는 국내 절차가 완료된 직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외교 공한으로 통보한다. 그와 같은 개정은 외교공한에 기재된 날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통보로부터 90일 이내에 발효한다. 그에 규정된 일방적 가속화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한 어떠한 양허도 철회되지 아니한다.

4.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점에서 최혜국(이하 “최혜국”이라 한다) 실행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, 그 관세율이 부속서 2-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.

제2.5조 동결

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. 이는 당사국이 다음을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.

가. 제 2.4 조제 2 항 또는 제 2.4 조제 3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인하한 관세를 다음에서 설정된 수준 중 더 낮은 것까지 인상하는 것

1) 부속서 2-가의 자국 양허표, 또는

2) 제 2.4 조제 2 항 또는 제 2.4 조제 3 항에 따른 것, 또는

나.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

제4절 특별 제도

제2.6조 상품의 일시 반입

1.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.

- 가.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에게 필요한 것으로서, 과학연구, 교육 또는 의학 활동에 사용되는 장비,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에 사용되는 장비, 그리고 영화촬영 목적에 사용되는 장비와 같은 전문 장비
- 나. 전시회, 박람회, 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
- 다. 상업용 견본품, 그리고
- 라.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

2. 각 당사국은,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, 자국 국내법에 따라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.

3. 어떠한 당사국도 제 1 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.

- 가.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, 거래,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
- 나.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
- 다.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채권이나 담보의 공탁을 수반할 것
- 라.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
- 마.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6 개월 이내에 수출될 것. 다만,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바.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, 그리고
- 사. 그 상품이 자국 국내법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가능할 것

4. 당사국이 제 3 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,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5.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이외의 다른 통관항구를 통하여 재수출되도록 허용한다.

6. 각 당사국은,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에 대해 책임이 있는 수입자 또는 다른 인이 불가항력의 이유로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면, 그 상품을 재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국의 관세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이 면제하도록 규정한다.

제2.7조

광고 목적이거나 견본으로 사용되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품의 무관세 반입

각 당사국은 광고 목적이거나 견본으로 사용되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.

제5절 비관세조치¹

제2.8조 수입 및 수출 제한

1.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.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.

2.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의 채택을 제안하는 경우, 그 당사국은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그 이유를 그 금지 또는 제한의 성격 및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, 실행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

3. 양 당사국은 제1항에 의해 통합된 1994년도 GATT상의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양해한다.

가.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, 수출 및 수입 가격 요건

나.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, 또는

다.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 제 18 조와 반덤핑협정 제 8.1 조에 의하여 이행되는 1994 년도 GATT 제 6 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수출제한

4. 당사국이 상품의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비당사국으로의 수출에 대하여

¹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와 관련된 비관세 조치는 제 5 장(위생 및 식물위생조치)과 제 6 장(무역에 관한 기술장벽)에서 각각 다루며, 그에 따라 이 절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 이는 제 2.15 조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,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음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가.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그 비당사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, 또는

나. 그 당사국의 상품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하는 조건으로,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소비되지 아니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비당사국으로 재수출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

5.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,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격설정, 마케팅 또는 유통 체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을 피할 목적으로 협의한다.

6. 어떠한 당사국도,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,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.

7.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제 6 항은 당사국이 제 6 항에 언급된 인에게 자국의 규제기관과 그 인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.

제2.9조 수입허가

1.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.²

2. 가.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,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,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. 그 통보는

1) 수입허가협정 제 5 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. 그리고

2)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.

나.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,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한다. 가능한 한도에서,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30 일 전에 그렇게 한다.

3. 어떠한 당사국도, 그 당사국이 수입허가절차에 대하여 제 2 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한,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그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.

² 제 1 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어떤 조치가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그 협정에 포함된 “수입허가”의 정의를 적용한다.

제2.10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

1. 각 당사국은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,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 년도 GATT 제 8 조제 1 항 및 그 주해상의 의무와 합치하도록 보장한다.
2.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현행 목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.

제2.11조 국영무역기업

1.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17조, 그 주해 및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의해 규율된다.
2.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국영무역기업의 개별 사례,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방식 및 그 운영의 양자무역에 대한 효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, 요청받은 당사국은 비밀정보에 관한 1994년도 GATT 제17조제4항라호를 저해함이 없이 가능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한다.

제2.12조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

1.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,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조치도 준비,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.
2. 가능한 한도에서, 각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의 공포와 발효일 사이에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.

제2.13조 작업반 설치

1. 제2.16조제3항다호에 따라, 양 당사국은 비관세조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협의 진행을 위해 각 당사국의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작업반을 상품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.
2. 작업반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고, 되도록이면 12개월 내에 권고를 포함하여, 그 검토 결과를 양 당사국에게 제출한다. 작업반의 검토결과와 권고사항은 검토 및/또는 조치를 위하여 상품무역위원회에 회부된다.

제2.14조 관세율할당 운영

1. 부속서 2-가에 규정된 대로 관세율할당을 수립한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3조 그리고, 더 명확히 하기 위해, 그 주해, 수입허가협정 및 그 밖의 모든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이러한 관세율할당을 이행하고 운영한다.
2.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율할당 운영 조치 및 이행이 일관되고 투명하도록 보장하고, 다른 쪽 당사국에게 차별을 유발하기 위해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.

제2.15조 시험소 지정

각각의 법률 체제의 규정과 요건을 감안하여, 관련 당국은 식품과 화장품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시험소 지정을 통한 시험 결과의 상호 인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장려된다.

제6절 제도 규정

제2.16조 상품무역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설치한다.
2. 위원회는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최소 매년 1회 회합하며,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대로 더 자주 회합할 수 있다.
3. 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.
 - 가.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,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을 증진하는 것
 - 나.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한 장벽, 특히 비관세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장벽을 다루고,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
 - 다. 작업반을 설치하고, 필요한 경우, 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, 그리고

- 라.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,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호부터 다호까지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

부속서 2-가

관세 인하 또는 철폐

1.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다음의 단계별 양허 유형이 제2.4조제1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.

- 가.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“0”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,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.
- 나.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“5”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,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.
- 다.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“10”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,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.
- 라.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“10-A”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8년차까지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. 관세는 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.
- 마.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“15”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,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.
- 바.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“20”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,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.
- 사. 단계별 양허유형 “PR-10”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1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,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90퍼센트가 유지된다.
- 아. 단계별 양허유형 “PR-20”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2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,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80퍼센트가 유지된다.
- 자. 단계별 양허유형 “PR-30”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3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

균등하게 인하하고,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70퍼센트가 유지된다. 그리고

차.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“E”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.

2. 상품에 대한 각 관세 인하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다.

3.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,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 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, 또는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, 최소한, 중국의 경우 가장 근접한 0.1위안 단위로 표시되도록, 한국의 경우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, 그 아래는 버린다.

4.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,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.

5.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,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한국 관세양허표

일반 주해

1. 한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(HSK)와의 관계: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,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,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.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,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.

2. 기준관세율: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2년 1월 1일 발효 중인 한국의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.

3. 양허단계: 부속서 2-가의 제1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,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20-A, 20-B, PR-1 및 PR-130을 포함한다.

가. 단계별 양허유형 “20-A”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0년차까지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. 관세는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.

나. 단계별 양허유형 “20-B”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2년차까지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. 관세는 이행 13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.

다. 단계별 양허유형 “PR-1”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에 기준세율의 1퍼센트를 인하한다. 그리고

라. 단계별 양허유형 “PR-130”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종가세 130퍼센트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,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종가세 130퍼센트가 유지된다.

중국 관세양허표

일반 주해

1. 기준관세율: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2년 1월 1일 발효 중인 중국의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.
2. 양허단계: 부속서 2-가의 제1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,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15-A, PR-8, PR-15, PR-35 및 PR-50을 포함한다.
 - 가. 단계별 양허유형 “15-A”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0년차까지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. 관세는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.
 - 나. 단계별 양허유형 “PR-8”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8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,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92퍼센트가 유지된다.
 - 다. 단계별 양허유형 “PR-15”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1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,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85퍼센트가 유지된다.
 - 라. 단계별 양허유형 “PR-35”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3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,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65퍼센트가 유지된다.
 - 마. 단계별 양허유형 “PR-50”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5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,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50퍼센트가 유지된다.

부록 2-가-1

한국

1.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한국이 적용하는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한국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(HSK)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. 특히, 이 부록에 포함된 중국의 원산지 상품에는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. HSK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,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중국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. 더 나아가,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.
2. 가.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.

번호	HSK 2012	품목	연간 물량 (메트릭톤)
1	0301999020	복어(활어)	140
2	0301999070	미꾸라지(활어)	3,200
3	0302899040	아귀(신선/냉장)	17
4	0303440000	눈다랑어[터너스오베서스(Thunnus obesus)](냉동)	270
5	0303899060	아귀(냉동)	1,900
6	0307511000	낙지(살아있는 것,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)	6,100
7	0307591020	낙지(기타)	19,400
8	0307714000	바지락(살아있는 것, 신선한 것 또는 냉장 한 것)	15,800
9	0307791030	바지락(냉동)	330
10	0307793020	바지락(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)	290
11	0713329000	팥(기타)	3,000
12	1107100000	맥아(볶지 않은 것)	5,000
13	1108191000	그 밖의 전분(고구마로 만든 것)	5,000
14	1201903000	대두(콩나물용)*	3,000
15	1201909000	대두(기타)*	7,000
16	1207400000	참깨	24,000
17	1605542091	조미오징어	980
18	1605542099	오징어(기타, 조제 또는 저장처리)	1,300
19	1605592090	소라(기타, 조제/저장처리)	7

* 주: HSK 1201903000 및 1201909000에 대한 관세율할당은 식용대두(IP)로 한정된다.

- (1) IP 대두란 95퍼센트 이상의 단일종 대두를 포함하고 이물질은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선적분의 대두를 말한다.
- (2) IP 대두는 벌크 선적될 수 없으며 포대나 컨테이너로 선적된다.

20	1605639000	해파리(기타, 조제/저장처리)	4
21	2308009000	식물성 물질 및 식물성 웨이스트,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(기타)	38,000

나.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-가의 제1항차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“E” 에 따라 취급된다.

3. 각 연도에 걸쳐 당사국의 운영당국은 각 관세율할당의 운영절차,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운영당국이 지정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시의적절하게 공표한다.

4. 각 당사국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운영을 적용하기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. 한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,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관세율할당 운영에 관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품무역위원회의 차기 회의에서 협의한다. 협의 시 양 당사국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한다.